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 안 이 유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을 아파트 단지로 분리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정원을 증원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금촌1동 통장의 정원 “17”를 “18”로, 금촌2동 통장의 정원 “8”을 “9”로 하여 정원을 2명 증원(안 제 2 조).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금촌 1 동 정원 “17”을 “18”로 하고, 금촌 2 동 정원 “8”을 “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동 별	정 원	비 고	동 별	정 원	비 고
금 촌 1 동	<u>17</u>		금 촌 1 동	<u>18</u>	
금 촌 2 동	<u>8</u>		금 촌 2 동	<u>9</u>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

행정구역 조정현황

□ 총괄

시	읍면동	현행	조정	증감	비고
파주시	계	283	285	+ 2	
	문산읍	34	34	-	
	파주읍	29	29	-	
	법원읍	28	28	-	
	월롱면	21	21	-	
	탄현면	20	20	-	
	교하면	34	34	-	
	조리면	23	23	-	
	광탄면	31	31	-	
	파평면	15	15	-	
	적성면	21	21	-	
	군내면	2	2	-	
	금촌1동	17	18	+ 1	
	금촌2동	8	9	+ 1	

통 조 정 내 역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조 정 사 유
시	읍면동	통 명	가 구	인 구	통 명	가 구	인 구	
괴 주 시	금촌1동	15통	1,218	3,941	15통	783	2,500	현행 15통은 아파트 거주 세대와 나머지 세대와의 융화가 이루 어 지지않고 있어 통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개통으로 분리
					18통	435	1,441	
	금촌2동	6 통	1,358	4,377	6 통	596	1,823	현행 6통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 며 금년 5월중 주공 아파트, 대영장미3차 아파트 신축으로 1,048 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어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통행정을 추진코자 아파트단지를 분리 1개통 중설
					9 통	762	2,554	

통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금촌1동 15 통

⇒

금촌1동 15 통
금촌1동 18 통

* 舊 금촌3리

2. 분리(통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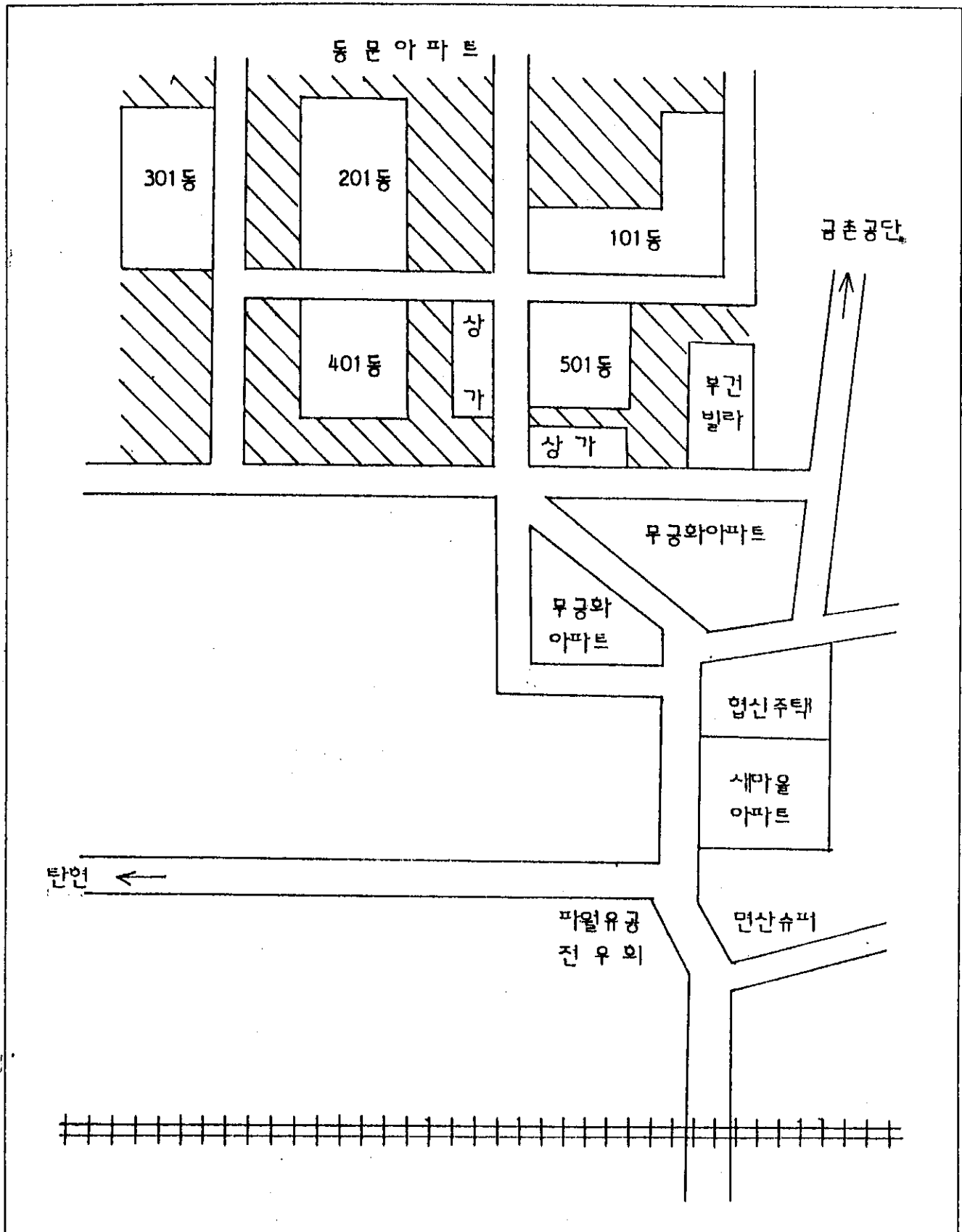
금촌1동 15통 지역은 1,218세대로서 1개통의 세대로는 과다하고 동문아파트 435세대와 나머지 세대와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이 분통을 희망하고 주민편의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2개통으로 분리 운영코자 함.

3. 분리후 통세

구 분	면적 (km)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통	1.14	1,218	3,941	
신설의 통	0.29	435	1,441	18 통
잔 여 통	0.85	783	2,500	

위 치 도

금촌1동



종 합 의 건 서

대상지역	15 통 → 15 통 18 통			
○ 15통 지역은 1,218세대에 3,941명의 인구로서 금촌1동 17개통의 평균 세대 및 인구수인 315세대 975명에 비하여, 3배이상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동문아파트 주민과 나머지 주민과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분통의 필요성이 있음 1997년 2월 5일 금촌1동장 안태영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	

중 합 의 건 서

대상지역	15 통 → 15 통 18 통
------	--

○ 15통 지역은 1,218세대에 3,941명의 인구로서 금촌1동 17개통의 평균 세대 및 인구수인 315세대 975명에 비하여 3배이상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동문아파트 주민과 나머지 주민과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고, 마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문아파트 주민은 15통의 주민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길 원하고 있어 동문아파트 5동과 인근 상가를 15통에서 분리해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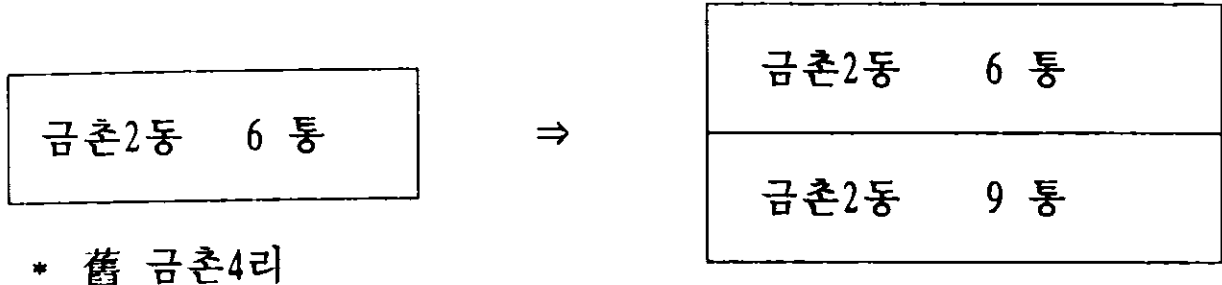
1997년 2월 일
15통장 장승만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	
---------	-----	---	-----	--

통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2. 분리(통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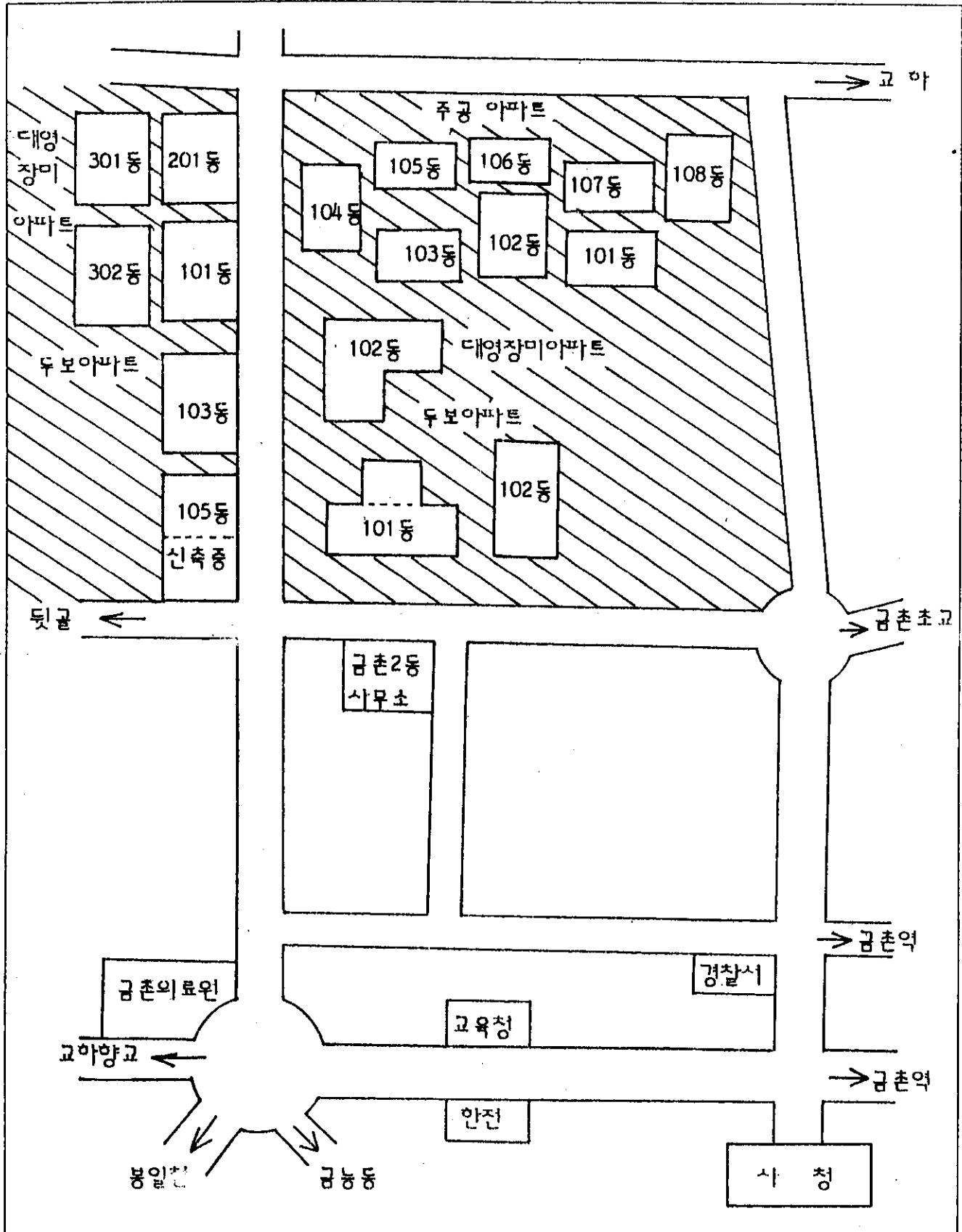
금촌2동 6통 지역은 1,358세대로서 1개통의 세대로는 과다하고 '97 5월 주공아파트 769세대, 대영장미3차아파트 279세대가 입주예정되어 통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존 6통을 재조정 아파트단지와 분리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통행정을 추진하고자 1개통을 증설코자 함.

3. 분리후 통세

구 분	면적 (km ²)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통	0.6	1,358	4,377	
신설의 통	0.07	762	2,554	9 통
잔 여 통	0.53	596	1,823	

위 치 도

금촌2동



총 합 의 건 서

대 상 지 역	금촌 2동 6통	→	금촌 2동 9통
□ 금촌 2동 6통의 경우 현재 13개반 1,358세대 4,377명으로서 - 두보 1,2차아파트 296세대, 장미 1,2차아파트 466세대로 총 5개반 762세대 2,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 향후 '97. 5월 주공아파트 769세대와 장미3차아파트 279세대 총 1,048세대 약3,300명이 입주예정으로 총아파트단지만 1,810세대 약 5,800명이 거주하게됨에 따라 통장 1명으로는 행정시책 전달은 물론 주민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 기존 6통을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행정운영은 물론 주민 생활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 통 분리는 주민들의 바라는 바이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아파트 단지를 묶어 1개통을 증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7 년 2 월 일 금촌 2 동장 이 창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

종합의견서

대상지역	금촌 2동 6통	→	금촌 2동 9통
□ 금촌 2동 6통의 경우 현재 13개반 1,358세대 4,377명으로서 - 두보 1,2차아파트 296세대, 장미 1,2차아파트 466세대로 총 5개반 762세대 2,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 향후 '97. 5월 주공아파트 769세대와 장미3차아파트 279세대 입주예정으로 통장 1명으로는 2,406세대 7,600여명을 관리 및 행정시책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아파트단지 1,810세대 5,800명을 1개통으로 분리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통개발위원회와 반장들의 동의로 1개통을 증설코자 건의합니다.			
1997 년 2 월 일 금촌 2동 6통장 한 길 수 			
찬반표시	찬성	○	반대